준법감시인 심사필 2024-5543(2024.10.16) (유효기간: 2024.10.16 ~ 2025.09.30)

가입자교육 가이드북

# 은퇴설계의 필수

# NH 퇴직염금

NONGHYUP BANK RETIREMENT PENSION

# 가입자 교육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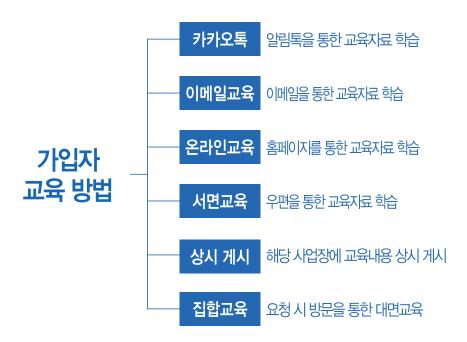


#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퇴직연금사업자 및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동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근로자(가입자)에게 퇴직연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은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이수방법

NH농협은행은 다양한 방법의 가입자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입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NH농협은행 퇴직연금을 가입해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CONTENTS

# 01.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

노후준비의 중요성	04
생애설계시 고려사항	05
노후준비 기본전략	05

## 02. 퇴직연금제도 이해

퇴직연금제도란?	06
퇴직연금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06
확정급여형(DB)	07
확정기여형(DC) 및 기업형IRP	08
표준형DC	09
개인형퇴직연금(IRP)	09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11

## 03. 알면 유용한 퇴직연금 정보

퇴직연금 절세전략	13
퇴직연금 운용전략	14

# 04. 퇴직급여 수령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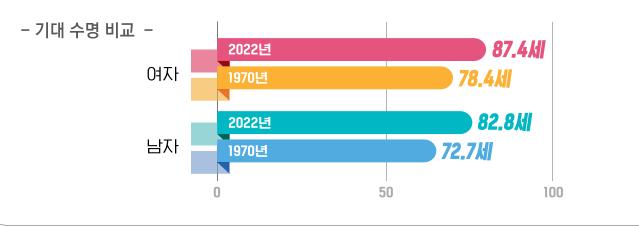
- 급여지급절차(IRP이전) 및 수급요건	16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17
기타 업무처리	18
퇴직연금 홈페이지 및 스마트뱅킹 활용 방법	19
퇴직연금 카카오톡 채널 활용 방법	23

# 노후준비<sub>의 중요성</sub>

급속한 고령화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고 있지만, 연금가입 등 노후 준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 노후준비 왜 필요할까요?

2022년 기준 60세 남성의 기대수명은 82.8세, 여성의 기대수명은 87.4세로 100세시대가 눈앞에 도래하였고. 은퇴이후의 노후기간 역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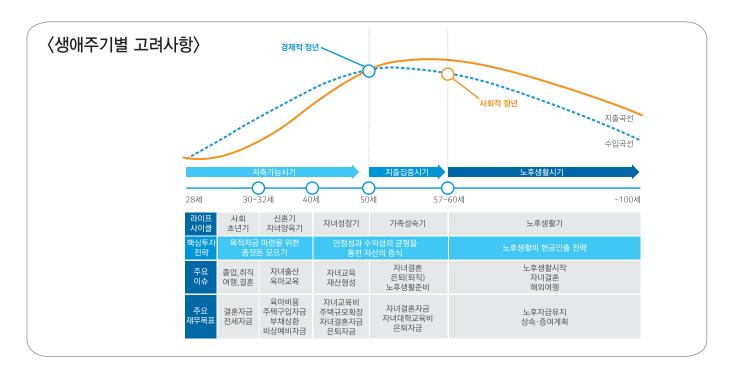


〈출처:통계청-생명표, 2022〉



# 생애설계시 고려사항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생애주기별 수입과 지출 흐름을 고려하여 재무목표를 세우고, 자산·부채관리를 통해 행복한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 노후준비 기본전략

## 3층 연금구조를 통한 노후자금 준비가 정답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가장 기본적인 노후준비 수단이지만 소득대체율 감소, 노인부양비율 증가 등으로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기에는 윤택한 노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국가, 기업, 개인 각각의 노력을 모아 안락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3층 연금구조를 통한 노후자금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 퇴직연금제도라?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외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l 퇴직연금제도 종류

## 확정급여형퇴직연금(Defined Benefit:DB)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DC)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 및 본인의 적립액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적립 및 운용하는 제도

# 퇴직연금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구 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 기업형 IRP	개인형 IRP	
급여종류	퇴직소득을 : 과세이연하여 연		연금 또는 일시금	
수급요건	퇴직	딕시	<ul><li>연금: 만 55세 이상 및 가입 기간 5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내)</li><li>일시금: 제한없음</li></ul>	
퇴직급여수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속기간 (퇴직금제도와 동일)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운용손익	• 가입자부담금 : 연간 1,800만원 한도 • 퇴직급여 : 퇴직 일시금 범위	
적립금 운용지시 및 운용손익 귀속	사용자(회사)	가입자	가입자	
개인 추가납입	불가	가능 주)	가능	
중도인출	불가	가능 (법정사유 충족시)		
담보대출		가능 (법정사유 충족시)		

<sup>₹</sup>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 한도

<sup>※</sup> 연금저축 합산하여 900만원까지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납입금액의 16.5% 최대 1,485천원,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시는 납입금액의 13.2% 최대 1,188천원 세액공제 가능

<sup>※</sup> 가입자 추가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절세전략은 11page 참고

# 확정급여형(DB)

정기적인 적립금(퇴직충당금)을 기업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여 운용합니다.

• 기업 적립금 수준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그 이상

## l 최소적립금이상 적립의무 부과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은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 사업연도말 적립해야하는 기준책임 준비금에 최소적립금 비율(이하 '최소 적립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구분	2012~2013	2014~2015	2016~2018	2019~2021	2022~
최소 적립비율	60%	70%	80%	90%	100%

####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 사용자의 의무

근퇴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이 내 해소하여야 합니다. (미해소시 사용자에게 1,0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 퇴직연금사업자의 의무

근퇴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재정검증결과를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합니다. 다만,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에도 서면으로 알리고.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근로자에게도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알려야합니다.

## l 적립금 초과분 처리

재정검증결과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를 초과한 경우 기업은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 계할 수 있으며, 150%를 초과하고 기업이 요구한 경우 금융기관은 150% 초과분을 기업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 I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적립금의 여러 환경들을 고려하여 개념, 조직, 목표, 전략, 관리 등의 기준 등을 명시하고 공유하는 문서입니다. 퇴직 연금 적립금 운용 관련 '규정'. '사규'. '가이드라인'으로 국민연금 등의 대다수의 기금들도 특성에 맞춰 작성 및 보유 하고 있습니다.

• 대상: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근로자 사용 사업장

• 의무사항: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 확정기여형(DC) 및 기업형IRP

기업은 적립금을 퇴직연금규약에서 선정한 금융기관에 근로자 개인별로 구분하여 적립합니다.

• 기업 적립금 수준 :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부

#### ※ 임금과 연간임금총액의 범위

임금은 기업이 '근로의 대가' 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퇴직급여 산정 제외 임금 : 일시적·불확정적인 성과급. 출장비 등 실비변상 금품

#### 기업 적립금 납입시기 및 납입지연

기업은 규약에 정한대로 연 1회 이상 매년 정기적으로 적립금을 납입합니다.

#### • 적립금 납입기한 연장

DC형과 기업형IRP에 가입한 기업은 노사합의에 의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적립금을 납입하여야 하나, 퇴직 연금규약 등에 납입기한 연장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납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미납금에 대한 지연이자

기업이 정하여진 기일(규약에 따라 납입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일)까지 미납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14일까지 연 10%, 14일 이후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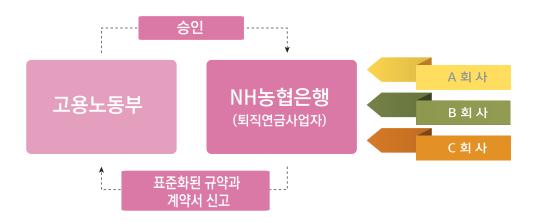
☞ 근로자에게 미납사실 및 납입기한 통지



#### ※ 지연이자 적용 제외사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④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표준형 DC



## • 가입방법

금융기관은 둘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DC형 퇴직연금제도의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고용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표준규약 사항

표준규약사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5조)

표준형DC제도의 특성과 명칭, 가입대상 사업의 범위 및 특성, 적립금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 디폴트 옵션, 탈퇴 사유와 절차,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

※ 디폴트옵션: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에 관하여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이 규약에서 미리 정해진 바에 따라 운용하거나 운용 방법을 정하는 기준

## 표준계약서 규정 사항

표준계약서 규정 사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6조) 표준규약의 이행, 제도운영과 관련한 비용 산출 및 부담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지 및 변경사유와 절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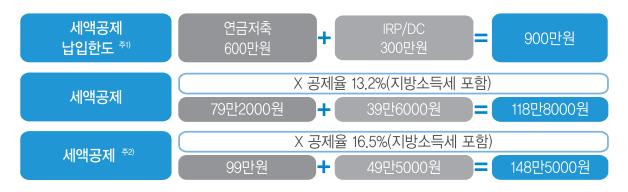
#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 및 본인의 여유자금을 자유롭게 적립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세제혜택: 개인 추가 납입액 중 연간 900만원까지 최대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가능

※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 그 외의 경우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가능

## • 세액공제 얼마나 받나?



- 주)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 추가 세액 공제 가능(당해 연도에 한함)
- 주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해(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해)인 경우 16.5%(지방소득세포함)
-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적립금 운용방법 :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
- 운용상품 : 원리금보장상품, 실적배당형상품(펀드 등) 등
- 수령/중도해지 : · 수령방법 : 연금 또는 일시금
  - · 중도해지 : 가능[과세는 아래 과세체계 참고]

소득원천	수령방법에 따른 과세		
	연금 수령주)	일시금수령	
퇴직소득	• 연금소득세 (이연퇴직소득세×70%(60%) <sup>주2)</sup> ) • 분리과세	<ul> <li>퇴직소득세</li> <li>분리과세</li> <li>[부득이한 사유<sup>주3)</sup>로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 연금 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60%)<sup>주2)</sup>), 분리과세]</li> </ul>	
추가납입 및 운용수익	<ul> <li>연금소득세 (5.5%~3.3%) 원천징수</li> <li>타 사적연금(연금저축 등)과 합산하여</li> <li>연 1,500만원 초과시 전액 종합과세 또는</li> <li>16.5%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선택 적용)</li> </ul>	• 기타소득세 (16.5%) • 분리과세 [부득이한 사유 <sup>주3</sup> 로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 연금소득세 (5.5%~3.3%), 분리과세]	

<sup>&</sup>lt;sup>주1)</sup>연금수령은 만 55세이후부터 가능하며, 과세제도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부담금만 있는 경우는 가입 후 5년 & 만 55세 이상 동시에 충족)

<sup>&</sup>lt;sup>주2</sup>이연퇴직소득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1년차부터 퇴직소득세의 60%과세

전에 부득이한사유: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

<sup>※</sup>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있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 DC/IRP 가입자

• 적용 시점 : 원리금보장상품이 만기가 된 후 별도의 운용지시 없이 6주가 경과했을 때

※ 해당 제도는 법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으로, 모든 DC/IRP 가입자는 예외없이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 • 초저위험 NH농협은행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예금 포트폴리오

시중은행 정기예금 100%로 운용되며,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안정성 최우선 추구

상품명	구성비율
국민은행 디폴트옵션형 정기예금 3년	40%
신한은행 디폴트옵션형 정기예금 3년	40%
기업은행 디폴트옵션형 정기예금 3년	20%

#### • 저위험 NH농협은행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 1호

시중은행 정기예금 (50%)+TDF상품 (50%)로 운용되며, 안정성 및 정기예금+ $\alpha$  추구

상품명	구성비율
하나은행 디폴트옵션형 정기예금 3년	50%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 혼합자산자투자신탁(O)	30%
NH-Amundi하나로TDF2030증권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 (C-0)	20%

#### • 저위험 NH농협은행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 2호

시중은행 정기예금 (50%)+TDF상품 (50%)로 운용되며. 안정성 및 정기예금+ $\alpha$  추구

상품명	구성비율
하나은행 디폴트옵션형 정기예금 3년	50%
한국투자TDF알아서2030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O)	30%
한화LifeplusTDF2030증권자투자신탁 (혼합-재간접형)종류(0)	20%

## • 중위험 NH농협은행 디폴트옵션 중위험 포트폴리오 1호

시중은행 정기예금 (30%)+TDF상품 (70%)로 운용되며, 안정성보다는 수익성 추구

상품명	구성비율
하나은행 디폴트옵션형 정기예금 3년	30%
NH-Amundi하나로TDF2045증권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C-O)	40%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 혼합자산자투자신탁(O)	30%

## • 중위험 NH농협은행 디폴트옵션 중위험 포트폴리오 2호

시중은행 정기예금 (30%)+BF·TDF상품 (70%)로 운용되며, 안정성보다는 수익성 추구

상품명	구성비율
우리은행 디폴트옵션형 정기예금 3년	30%
미래에셋QV글로벌자산배분50 증권투자신탁(O)	40%
한국투자TDF알아서2045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O)	30%

## • 고위험 NH농협은행 디폴트옵션 고위험 포트폴리오 1호

TDF상품 (100%)로 운용되며, 가장 공격적으로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

상품명	구성비율
NH-Amundi하나로TDF2045증권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C-0)	40%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 혼합자산자투자신탁(O)	40%
키움키워드림TDF2030증권자투자신탁 (혼합-재간접형)종류	20%

## • 고위험 NH농협은행 디폴트옵션 고위험 포트폴리오 2호

BF·TDF상품 (100%)로 운용되며, 가장 공격적으로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

상품명	구성비율
미래에셋QV글로벌자산배분70 증권투자신탁(O)	40%
KB온국민TDF2045증권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O-퇴직)	40%
한화LifeplusTDF2030증권자투자신탁 (혼합-재간접형)종류(0)	20%

# 퇴직연금 절세전략

## I 퇴직연금 과세체계

퇴직연금은 적립금 납입단계와 운용수익 발생단계에서 비과세 하였다가 급여 수령시 과세합니다.

### ▶ 과세이연효과

• 퇴직연금은 소득원천별 과세체계가 상이하며,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의 30%(40%<sup>주1)</sup>)를 감면받을 수 있어 세제상 유리합니다.

소득원천		수령방법에 따른 과세			
소득면선	일시금수령	연금 수령			
퇴직소득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이연퇴직 X 연금수령액 X 70%(60% <sup>주))</sup> 30%(40%)감면 소득세 X 10연퇴직소득			
추가납입	7151 4 5 111	연금소득세 <sup>주2(</sup> (5.5 ~ 3.3%)			
&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연령 및 유형	70세 미만	80세 미만	80세 이상
운용수익	(10.070, E 1 4 7 1)	세율	5.5%	4.4%	3.3%

<sup>&</sup>lt;sup>주()</sup>이연퇴직소득의 연금 실제수령연차가 11년차부터 퇴직소득세의 60%과세

## l 퇴직연금 세액공제

- ①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연600만원) 외 퇴직연금납입금액에 대한 연 300만원 별도 공제한도 추가
- ② 연금저축 합산하여 900만원까지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납입금액의 16,5% 최대 1,485천원,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시는 13.2% 최대 1,188천원 세액공제 가능
- ③ ISA 만기금액 개인형RP로 전환 시,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에 대하여 추가세액공제 가능(당해 연도에 한함)

※예시

L+c	납입액 공		절기	세액
<b>⊟</b> i	납입액		총급여액 -	구간별 적용
연금저축	퇴직연금	금액	5,500만원 이하(16.5%)	5,500만원 초과(13,2%)
0	900만원	900만원	1,485천원	1,188천원
600만원	300만원	900만원	1,485천원	1,188천원
400만원	500만원	900만원	1,485천원	1,188천원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485천원	1,188천원

ᅰ이둥지나이 의그	일시금수령시		연금 수령시	
개인추가납입 원금	원금	운용수익	원금	운용수익
세액공제 받은경우	기타소득세(16.5%)		연급	금소득세(5.5~3.3%) <sup>주1)</sup>
세액공제받지 않은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세(16.5%)	비과세	연금소득세(5.5~3.3%)

<sup>※</sup>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함 ※ 세액공제 받은 경우 : 연금 수령시

<sup>&</sup>lt;sup>주2)</sup>타 사적연금(연금저축 등)과 합산하여 연 1,500만원 초과시 전액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선택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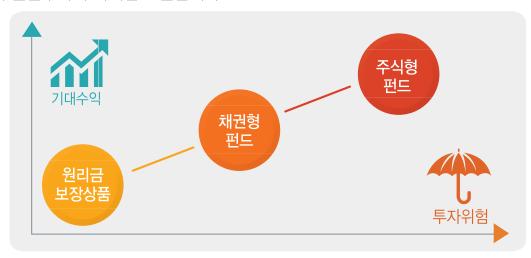
<sup>※</sup>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sup>&</sup>lt;sup>주1)</sup>타 사적연금(연금저축 등)과 합산하여 연 1,500만원 초과시 전액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선택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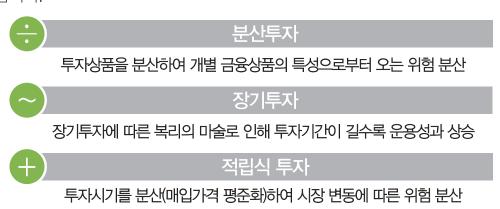
# 퇴직연금 운용전략

## l 분산투자 등 안정적 투자원칙

- 위험이란 기대수익과 실제 받을 수익이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성을 의미합니다.
-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투자위험도 높습니다.



• 다음의 3가지 투자원칙을 준수하여 기대수익률에 상응하는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안정적인 운용 전략을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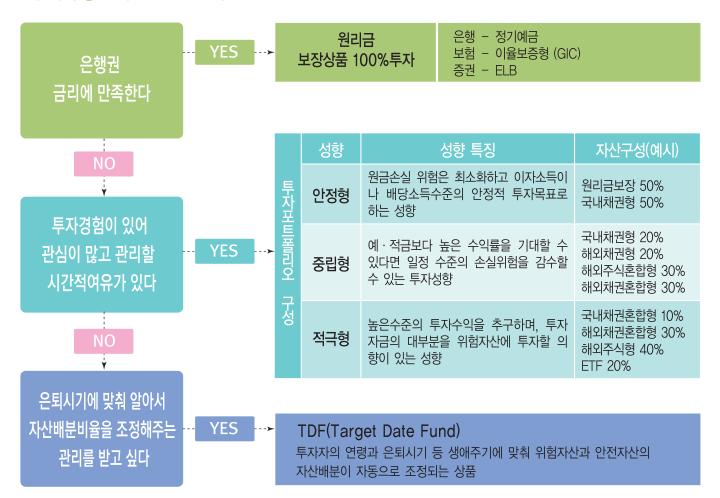
•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일련의 투자과정을 '자산배분'이라 합니다. 자산구성 비율은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l 운용방법별 수수료 체계 및 매도기준가

구 분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수수료	해당없음	환매수수료 <sup>쥐</sup>
상품보수	해당없음	판매·운용·수탁·사무관리 보수 등
매도기준가	해당없음	환매하는 펀드의 가격을 판단하는 시점의 기준가격 - 상품별 적용일 상이

<sup>&</sup>lt;sup>쥐</sup>상품별 환매수수료 부과 형태가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개별약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투자유형별 추천 포트폴리오



※ 본 자료는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은 아닙니다.

## 1 운용방법별 수익구조와 투자위험에 따른 운용전략 안내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RP)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방법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치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본 상품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상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행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운용사나 펀드를 권유하거나 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상품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지급절차(IRP이전) 및 수급요건

퇴직급여의 지급은 일반 요구불계좌가 아닌,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IRP계좌로 급여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급여이전 예외 사유(개인형 IRP가 아닌 일반 요구불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 ▶ 가입자가 만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 퇴직연금급여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만 이전 대상에서 제외)
-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IRP로 이전된 퇴직급여는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만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b>01</b> 퇴직사유 발생	<b>02</b> 근로자 개인형IRP 개설	03 개인형IRP 가입확인서 제출	이 4기업지급신청DC와 동일한 금융기관의 IRP로 개설한 경우현물이전*도가능
08 개인형IRP 자산매수 및 운용	07 개인형IRP로의 퇴직급여 이전 또는 현물이전 완료	<b>06</b> 운용자산 매각	05 지급신청 접수 및 지시전달
<b>09</b> 근로자 연금 또는 일시금 신청	10 개인형IRP 운용자산 매각	<b>11</b>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sup>\*</sup> 운용상품에 따라 현물이전 가능여부 별도확인 필요함.

## IRP 이전시 효과

- ▶ 퇴직금을 실질적인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 은퇴자금을 한 곳에 모아 은퇴자산플랜 관리가 용이합니다. ▶ 과세이연으로 운용재원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IRP 선택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상품

운용지시서를 통해 원리금보장상품(정기예금 등) 및 실적배당 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운용상품 및 투자비율은 가입자가 직접 결정하며 그 운용결과는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 ※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총 투자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70/100 초과 불가
- ※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2015. 7. 1.부터 전 금융기관에서 자사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운용이 제한되어 타사정기 예금 또는 실적 배당형상품으로 운용지시 하여야 합니다.

## | 수급요건

구분	내용
연금	<ul> <li>연령요건 : 만 55세 이상</li> <li>납입요건 :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인출         (단, 퇴직소득을 재원으로 연금수령하는 경우 제외)</li> <li>수령요건 : 연금수령한도<sup>₹)</sup> 내에서 인출</li> </ul>
일시금	• 일시금 수급을 원하거나 연금수급 요건 미충족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총액주() 연금수령한도\* = x 120% 11-연금수령연차주의

<sup>주()</sup>매년 1월1일(과세기간 개시일)의 평가금액 (단. 연금수령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에는 연금수령 개시 전일자 평가금액)

- <sup>주2)</sup>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년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 (단. '13.3.1 전 가입한 연금계좌 및 '13.3.1 전 가 입한 DB제도로 전액이 IRP로 과세이연한 경우 : 6년차 적용)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연금수령한도 미적용시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최소 5년 이상 연금수령을 하여야 합니다. 연금수령한도 내 금액은 연금소득세로 과세하며, 초과 인출 시 소득원천별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 중도인출 : 적립금의 100% (DB제외)
- 담보대출: 적립금의 50%까지(5천만원 한도) (단,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사유 및 요건일 경우 고시하는 한도까지 가능)

#### 중도인출 법정사유

-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구입하는 경우
-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주택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경우 (하나의 사업장 근무동안 1회로 한정)
- ③ 본인.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118조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DC제도의경우, 가입자 본인 연간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⑤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⑥ '사업주의 휴업실시로 임금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받은 퇴 직연금담보대출에 대해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그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 '24.09 현재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퇴직연금사업자 중 NH농협은행 단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담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해놓은 요건에 해당할 경우 담보대출 가능하며. 자금용도별 대출한도는 자금용도에 필요한 금액 내에서 각각 상이합니다.
- 대출상품은 당행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일부 제한 될 수 있으며. 대출금액에 따른 인지대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업무처리

#### 1계약이전

계약이전이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 변경, 퇴직연금제도 변경, 사업자 변경에 따른 가입자 이동등을 의미합니다.

#### ※ 계약이전 사유

- ① 기업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금융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 ② 기업형IRP 또는 확정기여형(DC)제도의 일부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 ③ 확정급여형(DB) 또는 기업형IRP 가입자가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는 경우
- ④ 계열사 전출입, 합병 등으로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었으나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 ⑤ 금융기관이 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 ⑥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취소 또는 등록이 말소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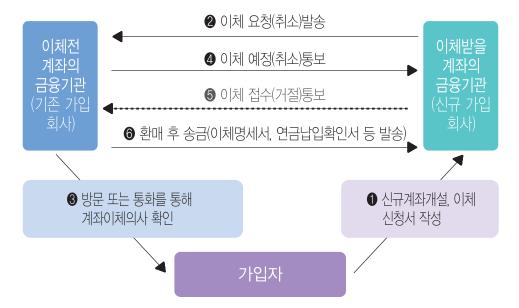


## I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계좌간 이체

·요건: 55세이후, 가입일로부터 5년경과(퇴직금재원은 즉시), 전액이체

·효과 :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등의 세제혜택은 유지하면서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

·절차



## l 퇴직연금제도 중단 또는 폐지

ᄌ다	사 유	일시적인 재정압박 및 규약상 명시된 중단사유 또는 규약위반으로 제도운영 중단
중단	업무처리	퇴직급여 지급, 적립금 운용, 운용현황 통지, 가입자 교육 등 기본 업무유지
폐지	사 유	폐업, 노사합의에 의한 폐지 결정, 제도 변경에 따라 기존 제도를 폐지
페시	업무처리	계약 해지, 기존 적립금 개인형IRP로 이전(중간정산 개념)

☞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은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 l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 및 지급신청 안내

- · 대 상: NH농협은행 퇴직연금 가입업체 중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가입자
- · 확인방법: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
- · 신청방법: 가입자 본인이 직접 농협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 · 필요서류: 신분증 및 퇴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택1) 기타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고객센터(1588-5995) 및 거래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 이용방법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https://www.payinfo.or.kr)"접속▶금융정보조회▶'미청구퇴직연금 조회' 또는 앱스토어 "어카운트인포"에서 확인 가능

# 퇴직연금 홈페이지 및 스마트뱅킹 활용 방법

퇴직연금 잔액, 수익률 조회 등의 업무를 NH퇴직연금 홈페이지, NH스마트뱅킹 앱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I NH농협은행 퇴직연금 홈페이지

- ·인터넷 주소창에 직접 입력 시 : <a href="https://pension.nonghyup.com">https://pension.nonghyup.com</a>
- ·포털 **농협 퇴직연금** ▼ 📿 검색
-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2025년 1월부터 퇴직연금 홈페이지와 농협인터넷뱅킹 통합 운영 예정(퇴직연금 홈페이지 내 공지 참조)

## I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 퇴직연금 메뉴 클릭

●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퇴직연금 사이트 연동 접속



## I NH농협은행 퇴직연금 홈페이지: 사전지정운용방법 신청(DC/IRP)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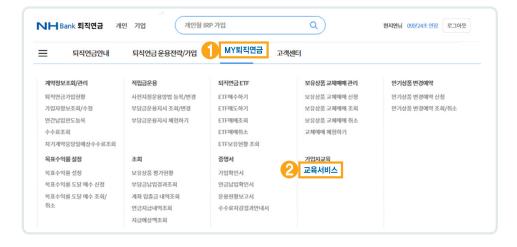
## I NH농협은행 퇴직연금 홈페이지: 운용비율 조회/변경 또는 교체매매 신청

향후 입금되는 부담금의 운용비율을 조회 및 변경하거나 현재 보유 중인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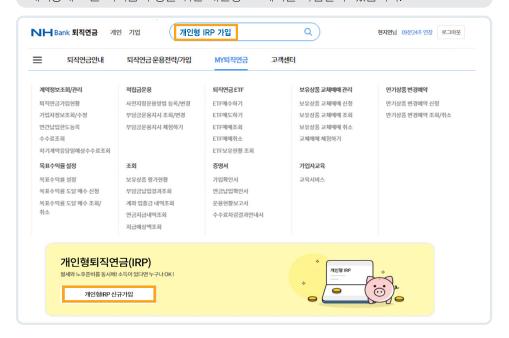
# I NH농협은행 퇴직연금 홈페이지: 가입자교육 온라인 동영상 수강

이해하기 쉽게 구성한 동영상 컨텐츠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I NH농협은행 퇴직연금 홈페이지: 개인형 IRP 신규가입

세액공제 또는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IRP계좌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INH 퇴직연금 APP · 안드로이드(Play 스토어), 애플iOS(App store)



#### 1 퇴직연금 메뉴위치



## l 연금신청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뱅킹

- 1 가입/신청
- 2 연금신청



#### 올원뱅크

- 1 연금관리
- 2 연금신청



## l 운용현황보고서

운용 중인 적립금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 조회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뱅킹

- 1 나의 현황
- 2 운용현황보고서



#### 올원뱅크

- 1 나의 현황
- 2 운용현황보고서



#### l 보유상품변경 신청

현재 보유중인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뱅킹

- 1 상품관리
- 2 보유상품변경 신청



#### 올원뱅크

- 1 상품관리
- 2 보유상품변경



# 퇴직연금 카카오톡 채널 활용 방법

스마트채팅, 알림서비스 등의 업무를 카카오톡 채널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び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퇴직연금 전문상담센터 T.1588-5995 퇴직연금 홈페이지 https://pension.nonghyup.com

디폴트옵션이해하기



디폴트옵션고객안내장



## NH퇴직연금 APP

NH스마트뱅킹



#### 올워뱅크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NH농협은행 퇴직연금 전문상담센터 ☎ 1588-599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적립금 운용현황 보고서 [요약]

(작성기준일: 2024년 09월 30일)

□ 이 운용보고서 [요약]은 고객님이 가입하신 퇴직연금계좌의 대상기간(2010년 03월 29일)부터 (2024년 09월 30일)까지의 비용, 실질수익률 등 주요정보를 제공합니다.

가. 기본정보				
가입자(또는 사업장)	국립한국교통대학교산학협력단	계좌번호	0900000946041	
가입(계약)일자	2010년 03월 29일	제도유형	확정급여형(DB)	
가입자 소속회사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금수령개시 가능일*		

#### 나. 주요정보

■ 대상기간(2010년 03월 29일)부터 (2024년 09월 30일)까지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한 **납입원금** 합계액은 (①원)이며, **적립금(평가금액**)은 (⑤원), **누적수익률**은 (⑥%) 입니다.

① 납입원금	3,360,697,540 원	
* I.자산현황_1.적립금현황의 '기초적립금'+'납입액'		
② 운용손익	184,671,207 원	

<sup>\*</sup> 중도인출, 연금지급, 퇴직급여 지급, 제도전환 등

④ 수수료 금액*	(-)	41,070,200 원
-----------	-----	--------------

- \* DC 및 기업형IRP의 경우, 기업(사용자)이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하, 수익률 계산시 동일)
- 납입원금[①]과 운용손익[②]의 합계에서 중도인출금 등[③] 및 수수료 금액[④]을 차감 한 결과가 적립금(평가금액)[⑤] 입니다.

⑤ 적립금(평가금액)	1,247,831,537 원

⑥ 누적수익률(수수료 차감 후)	4.27 %

⑦ 연평균수익률*	0.29 %
-----------	--------

<sup>\*</sup> 최초 부담금 납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계약에 한하여 연평균 수익률을 안내해 드립니다.



# 적립금 운용현황 보고서 (본문)

대상기간	2010년 03월 29일 ~ 2024년 09월 30일		
가입(계약)일자	2010-03-29		
기준일자	2024-09-30		
제도유형	확정급여형(DB)		
가입자(또는 사업장)			
가입자 소속회사	국립한국교통대학교산학협력단		
연락처(휴대폰/이메일)	***-***/		

# 1.자산 현황

#### 1. 적립금 현황

( 단위 : 워)

기초	납입액(B)		차감액(C)		0.0 4.01(5)	당기말
적립금(A)*	회사납입	가입자납입	수수료 중도인출 등		운용손익(D)	적립금** (A+B-C+D)
0	3,360,697,540	0	41,070,200	2,256,467,010	184,671,207	1,247,831,537

\* 대상기간 시작일의 전일자의 적립금 \*\* 기준일자의 적립금

#### 2. 납입 및 차감 세부내역

#### (1) 납입액 (부담금)

( 단위 : 원)

회	사 납입액	가입자 납입액		
납입일자	납입금액	납입일자	납입금액	
대상기간 시작일~전기말*	3,087,149,780	대상기간 시작일~전기말*		
2023–10	1,972,800			
2023–11	3,660,100			
2023–12	7,849,100			
2024-01	24,462,700			
2024-02	229,023,980			
2024-03	1,811,280			
2024-04	905,300			
2024-05	2,080,900			
2024-07	1,781,600			
합 계	3,360,697,540	합 계	0	

<sup>\*</sup> 전기말 : 기준일자로부터 기산하여 1년 전일자

#### (2) 차감액 (수수료, 중도인출 등)

(다의 : 위)

					<u>(단위 : 원)</u>
	수수료			중도인출금 등	
세부항목*	차감일자	차감금액	세부항목**	차감일자	차감금액
수수료	대상기간 시작일~전기말***	34,589,880	중도인출 등	대상기간 시작일~전기말***	2,006,805,890
자산수수료	2024-04	3,240,160	퇴직	2023-10	8,222,700
운용수수료	2024-04	3,240,160	퇴직	2023-11	3,660,100
			퇴직	2023-12	7,849,100
			퇴직	2024-01	87,650,800
			퇴직	2024-03	68,033,100
			퇴직	2024-04	19,028,500
			퇴직	2024-05	10,404,100
			퇴직	2024-07	26,176,900
			가입자이전	2024-07	18,635,820
합 계		41,070,200	합 계		2,256,467,010

\*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 중도인출, 연금지급, 퇴직급여 지급, 제도전환 등 \*\*\* 전기말 : 기준일자로부터 기산하여 1년 전일자

## 3. 보유 상품현황

(1) 원리금보장형

(단위 : 원,%)

_ (:)				( 🗀 )	1 · 🗁 ,/0/
상품명	매입원금	지급금*	평가손익**	적립금	
080	71860	110	0 1 1 7 7 7	평가금액***	비중
농협현금성자산(대기자금)	529,503	0	0	529,503	0.04
(DB)신한은행 정기예금 1년	1,013,172,390	174,514,959	58,325,082	896,982,513	71.88
(DB)국민은행 정기예금 1년	191,203,648	0	30,638,759	221,842,407	17.78

(DB)하나은행 정기예금 1년	108,960,026	0	19,517,088	128,477,114	10.30
			합 계	1,247,831,537	100.00

- 수수료 차감, 중도인출, 연금지급, 퇴직급여 지급, 제도전환 등
- \*\* 평가손익 = 적립금 매입원금 + 지급금 \*\*\* 기준일자의 평가금액
- ※ 동일한 상품을 여러 개 보유하신 경우 운용상품별 평가금액을 합산하여 표시하였습니다.

## Ⅱ.수익률 현황

1. 전체 수익률 현황

(단위 : %)

누적수익률* ( 대상기간 : 2010.03.29 ~ 2024.09.30)	연평균수익률**	
4.27	0.29	

- \* 누적수익률 = {적립금(평가금액) + 중도인출금 등} / 납입원금 1
- \*\* **연평균수익률(기하평균)** = (1+대상 기간 누적수익률)^(1/대상년수) 1 (단. 최초입금일 이후(전액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는 인출 후 최초입금일 이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평균수익률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2. 상품별 금리 / 수익률 현황

(1) 원리금보장형

(다의 · %)

상품명	금리 (최저~최고)	매수일자 (최초매수일자~최종매수일자)	<b>만기예정일</b> (최초만기예정일~최종만기예정일)
농협현금성자산(대기자금)	3.48 ~ 3.48	~	~
(DB)신한은행 정기예금 1년	3.20 ~ 3.90	2023.10.11 ~ 2024.08.11	2024.10.11 ~ 2025.08.11
(DB)국민은행 정기예금 1년	3.14 ~ 3.45	2024.03.02 ~ 2024.08.04	2025.03.02 ~ 2025.08.04
(DB)하나은행 정기예금 1년	3.35 ~ 3.90	2023.11.30 ~ 2024.05.20	2024.11.30 ~ 2025.05.20

- ※ 동일한 상품을 여러 개 보유하신 경우 금리는 최저~최고 금리로, 매수일자는 최초~최종 매수일자로,만기예정일은 최초~최종 만기예정일자로 표시 됩니다.
- ※ 원리금보장상품 재예치 특약
- 얼니금도공앙굽 세메지 즉박 정기예금·이율보증형보험(GIC)은 만기예정일 2영업일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만기일에 동일한 운용상품으로 자동 재예치됩니다.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영업점에서 만기예약교체매매 등록을 통해 상품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 재예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산관리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운용방법(중도해지 수수료가 없고 수시 현금화가 가능 하지만 금리가 낮은 운용방법)으로 운용지시 합니다.
- 문용시시 입니다.
  1) 보험계약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중 금리연동형
  2)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
  ※ 만기일자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에 재예치 됩니다.
  ※ 포괄적운용지시를 한 고객님의 경우 영업 방문자는 적립금 입금, 상품 만기 재예치 시점마다 당행에서 제공 가능한 한도 내 최적상품으로 자동 매수됩니다. 변경을 원할 경우 영업점 방문이나 비대면 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Ⅲ.수수료 등 비용 안내

#### 1. 수수료 부과 기준 및 내역

#### ■ 운용관리 수수료

평가액	수수료율
0원~10억원 미만	0.35%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0.30%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0.28%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0.20%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0.19%
500억원 이상~1천억원 미만	0.18%
1천억원이상	0.07%

부과기준:[매 계약응당일]적립금자산평가액평잔X해당수수료율

#### ■ 자산관리 수수료

## 부과기준 및 수수료율

평가액	수수료율
0원 ~ 50억원 미만	0.30%
50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0.28%
5천억원 이상~1조 미만	0.26%
1조 이상	0.25%

부과기준:[매 계약응당일]신탁재산평가액평잔X해당수수료율

#### 연금수령 후

- 운용관리 수수료
- 계산기준일 현재 연금지급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 : 면제
- 자산관리 수수료

평가액	수수료율			
경기책	일시부담금(퇴직급여)	개인부담금(본인적립)		
1억 미만	0. 25%	0. 20%		
1억 이상	0. 23% 0. 18%			

부과기준:[매 계약응당일]신탁재산평가액평잔X해당수수료율

- 계약년수에 따라 장기계약할인율을 적용합니다. (2차년도(10%), 3차년도(12%), 4차년도 이후(15%))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한 자활기업,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회원시설에 대해서는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 납입내역 (2010년 03월 29일 ~ 2024년 09월 30일 )

#### - 기업부담금 적용 수수료

수수료 종류	발생일자	평균잔액(A)	수수료율 (B)	산출수수료 (C=A*B)	수수료 할인금액(D)	납입수수료 (C-D)
운용	2011.03.29	78,320,481	0.45	352,440	0	352,440
자산	2011.03.29	78,320,481	0.30	234,960	0	234,960
운용	2012.03.29	130,902,999	0.45	589,060	0	589,060
자산	2012.03.29	130,902,999	0.30	392,700	0	392,700
운용	2013.03.29	177,450,465	0.45	798,520	0	798,520
자산	2013.03.29	177,450,465	0.30	532,350	0	532,350
운용	2014.03.29	229,996,662	0.45	1,034,984	103,498	931,480
자산	2014.03.29	229,996,662	0.30	689,989	68,998	620,990
운용	2015.03.29	257,555,601	0.45	1,159,000	139,080	1,019,920
자산	2015.03.29	257,555,601	0.30	772,666	92,719	679,940
운용	2016.03.29	287,628,114	0.45	1,294,326	194,148	1,100,170
자산	2016.03.29	287,628,114	0.30	862,884	129,432	733,450
운용	2017.03.29	383,455,512	0.45	1,725,549	258,832	1,466,710
자산	2017.03.29	383,455,512	0.30	1,150,366	172,554	977,810
운용	2018.03.29	486,426,711	0.45	2,188,920	328,338	1,860,580

자산	2018.03.29	486,426,711	0.30	1,459,280	218,892	1,240,380
운용	2019.03.29	541,297,510		2,435,835		
자산	2019.03.29	541,297,510	0.30	1,623,883		
운용	2020.03.29	649,912,530	0.35	2,274,693		
자산	2020.03.29	649,912,530	0.30	1,949,730	292,460	1,657,270
운용	2021.03.29	697,757,317	0.35	2,442,142	366,322	2,075,820
자산	2021.03.29	697,757,317	0.30	2,093,270	313,990	1,779,280
운용	2022.03.29	891,077,566	0.30	2,673,224	400,984	2,272,240
자산	2022.03.29	891,077,566	0.30	2,673,224	400,984	2,272,240
운용	2023.03.29	1,101,438,388	0.30	3,304,307	495,647	2,808,660
자산	2023.03.29	1,101,438,388	0.30	3,304,307	495,647	2,808,660
운용	2024.03.29	1,270,650,915	0.30	3,811,952	571,792	3,240,160
자산	2024.03.29	1,270,650,915	0.30	3,811,952	571,792	3,240,160
		소 계		47,636,513	6,566,270	41,070,200

- \* DB 및 개인형IRP의 수수료는 적립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 DC 및 기업형IRP의 경우에는 기업(사용자)이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기업이 수수료를 부담하고(별도 현금납부),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수수료를 부담(적립금 차감)합니다.
- ※ 운용현황보고서는 기업(사용자)이 별도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 ☞ 기타 적립금 운용현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퇴직연금 거래 영업점 및 퇴직연금 전문상담센터 ☎ 1588-59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의 '퇴직연금 통합공시' 메뉴를 통해 퇴직연금사업자별 퇴직연금 수익률, 총비용부담률 등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 NH농협은행

# 표준급여 액

기 업 명	국립한국교통대학교산학협력단
기준일자	2024-09-30

(단위:원)

평균근속기간(년)	평균임금	표준급여액
5.59	3,461,760	19,351,238

#### 참고사항

■ **평균근속기간** : 산출가능일자를 기준으로 사업장(또는 회사) 전체 가입자의 평균근속기간의 합을

전체 가입자수로 나눈 값

■ **평 균 임 금** : 산출가능일자를 기준으로 사업장(또는 회사) 전체 가입자의 평균임금의 총합을

전체 가입자수로 나눈 금액

■ **가입자의 평균임금** :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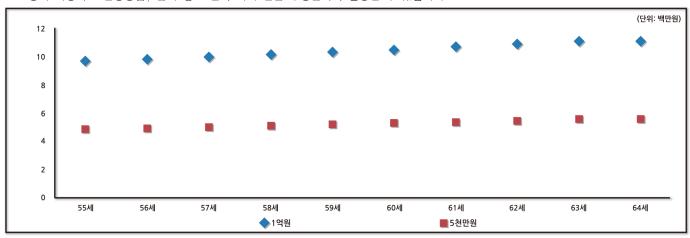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표준 급여액 : 평균근속기간 및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액으로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반영하여 산출

#### ■ 퇴직일시금 5천만원과 1억원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년간 예상수령액(가정)

[산출시 고려사항 : 현재연령 55세, 연금수령연령 55세, 1년 정기예금운용(1.86%), 연금수령기간 10년, 퇴직소득세 4% 가정] ※ 상기 예상액은 운용상품, 금리 등 조건에 따라 연금 수령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납입현황

기 업 명	국립한국교통대학교산학협력단
최근 3년 납입기간	2021-10-01 ~ 2024-09-30

## ■ 기준일(2024-09-30) 현재 최근 3년간 연차별 납입현황

(단위:원)

납입연차	납입연차 납입기간	
1년 차	2023-10-01 ~ 2024-09-30	273,547,760
2년 차	2022-10-01 ~ 2023-09-30	477,818,080
3년차 2021-10-01 ~ 2022-09-30		508,627,680
Ċ	1,259,993,520	

#### 참고사항

• 납입연차 : 부담금 납입현황을 연단위로 표시(1년차, 2년차, 3년차)

■ 납입기간 : 산출기준일 현재 직전 3년 중에서 당해 납입연차에 해당하는 기간

(도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 납입금액 : 장래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담하는 금액으로

납입된 총액



#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기 업 명 국립한국교통대학교산학협력단

## ■ 기준일 현재 회사의 기준책임준비금 및 적립금액 정보

(단위:원, %)

기준일	기준책임	<b>심준비금</b>	최소적립금	적립금액	적립비율
기판된	계속	비계속	최고역됩니	7807	역합의할
2024-02-29	1,321,750,637	1,168,181,380	1,321,750,637	1,364,077,017	103.2

#### 참고사항

■ 기준일자 : 사업연도 종료일

■ 기준책임준비금 : 회사가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Max(계속기준금액, 비계속기준금액)

\* 계속기준금액 :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 고려한 퇴직급여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의

급여 예상액을 뺀 금액

\* 비계속기준금액 :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 가입기간동안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

■ 최소적립금(기준책임준비금×최소적립비율)

구분	'12 ~ '13년	'14 ~ '15년	'16 ~ '18년	'19 ~ '21년	2022. 1. 1 이후
최소적립비율	60%	70%	80%	90%	100%

■ 적립금액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회사가 납입한 금액으로 기준일자에 해당하는 적립금 평가금액

■ 적립비율 : MAX(계속기준금액, 비계속기준금액)에 대한 적립금액의 비율

